

헌재는 주 52시간제에 의한 영세 사업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말라 - 조속한 심판으로 50인 미만 영세 기업주와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, 생존권을 보호해야

정부(고용노동부)는 16일 7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강행한다고 한다. 한국경영자총협회.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14일 긴급회의를 갖고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을 미뤄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다.

이제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어 가뜰이나 만성적인 인력난에 높은 최저임금과 코로나 사태로 시달리고 있는 영세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. 고용노동부가 내세우는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는 업종 근로시간 노사합의 등 제한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.

실현 불가능한 주 52시간제로 인해 영세기업의 기업주는 당장 내달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, 근로자들은 야근 특근 등이 불가능해져 임금이 삭감되어 생활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. 50인 미만 기업의 상당수는 용접 열처리 금형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'뿌리산업'이다.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영세기업들인데 일손 부족으로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존속할 수 없다. 뿌리산업이 흔들리면 중견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.

한변(韓辯)은 2019년 5월 헌법재판소(헌재)에 주 52시간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. 2018년 제정되어 세계에 유례없이 급작스럽고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주 52시간제는 사용자의 신체의 자유, 노사 쌍방의 계약의 자유 및 500 만여 영세기업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심각히 제한한다.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주 52시간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 할 것이다.

우리는 헌재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영세기업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여 조속한 심판으로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.

2021. 6. 18.

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(한변)
회장 김태훈